

●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6-0021호

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6년 05월 29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

- 1. 유해간행물 목록 : 아래 목록표와 같음
- 2. 의무사항 :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·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.
- 3. 벌칙내용 :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유해간행물 목록표

【도 서】

유해간행물 번호	서명	권호수	저자	출판사/수입자	출판 연월일	심의 결정 기관	심의 번호	결정 연월일	결정 사유	자체 유해 표시 여부	고시의 효력 발생일
1	BO PHOK	Series.5		다산북스	2026- 05-31	간행물 윤리위 원회	2640 001	2026- 05-15	음란성	자체 유해 표시	관보 게재일
2	BO PHOK	Series.6		다산북스	2026- 05-31	간행물 윤리위 원회	2640 002	2026- 05-15	음란성	자체 유해 표시	관보 게재일